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1. 9. 7.(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미 의원 외 7 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김영미 의원 외 7명
- 제안일 : 2021. 8. 27.
- 회부일 : 2021. 8. 31. (의안번호 : 21-79)

2.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예산의 지원 및 실적보고서 제출(안 제3조~제4조)
-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 준용(안 제6조)

4.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 제5조, 제15조, 제16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절차이행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했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김영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이하 “법” 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마포구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활동 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의 명시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재향경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과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하여, 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를 두고 운영되며, 현재

우리구에는 ‘서울마포구재향경우회’가 활동 중임.

<표 1> 마포구 재향경우회 현황

단체명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회장	황규명
회원 수	1000 여명
사무실 소재지	마포 경찰서 내

- 최근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2020. 3. 21)으로
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재정) 제3항¹⁾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개정 전 법에는 정부만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었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1호²⁾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
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³⁾에서도
위 지방재정법과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음.

1) 제15조(재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3)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구청장은「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 자치구가 재향경우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표 2> 서울 지자체의 재향경우회 관련 조례 현황

자치구	담당부서	조례제정	예산지원 (단위 만원)	지원 방식	조례 항목 검토	
					예우	예산지원 방법
강 북 구	행정지원과	20.11.13.	500	보조금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관 악 구	자치행정과	21.02.18.	200	보조금	×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구 로 구	어르신 청소년과	20.11.10.	430	사업비	×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금 천 구	아동 청소년과	20.12.31.	400	사업비	×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동 작 구	자치행정과	21.03.11.	230	보조금	×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서 초 구	행정지원과	21.01.13.	200 방배,서초	보조금	○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성 북 구	자치행정과	20.11.05.	200 종암,성북	보조금	×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21.03.18.	230	보조금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중 구	동정부과	21.04.02.	600 중구,남대문	보조금	×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중 랑 구	마을협치과	21.01.07.	×	-	○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목적)**는 법에 따라 우리 구에 조직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정의)**는 재향경우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 **안 제3조(예산의 지원 등)**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제5호를 제외하고는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치안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등 각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이나 회원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그 각 지원 대상 사업은 관련 상위 법령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를 명시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 시 실적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지도 및 감독)**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는 구청장의 감독권한을 규정하고, **안 제6조(준용)**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경우회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적 필요적 요건은 충족되는 점, 보조금 지원 또한 공익사업 등에 한정되어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조금예산이 한정된 만큼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간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회단체의 보조금 심의 시 사업계획서와 더불어 지역 활동의 공헌여부 등 심의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투명한 정산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붙임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鄉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복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과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도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지방보조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